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90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김승원 · 민병덕 · 이정문
강준현 · 임호선 · 김종민
김원이 · 서미화 · 이주희
이재강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를 “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받은”을 “받거나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u> ----- ----- ----- -----.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u>위원회</u> 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6조(보상금) ① ----- ----- ----- ----- ----- ----- ----- <u>위원회</u> <u>회 또는 조사기관등</u> ----- ----- <u>. 이 경우</u> <u>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u> <u>조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u>

